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 정관

<제정 2020. 7. 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 명칭은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University Association of Drone Sport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대학드론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스포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대학드론스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학생선수들이 드론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도록 하고, 드론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국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 드론스포츠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2. 대학 드론스포츠의 규정 집행 및 감독
3. 대학 드론스포츠 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
4. 대학 드론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5. 대학 드론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드론스포츠 행사 지원 사업
6. 대학 드론스포츠 지도자들의 관리·지원 및 학생선수 선발 지원
7. 대학 드론스포츠의 시설, 자료수집, 조사 통계 등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회원교

제5조(회원대학의 가입과 탈퇴·제명)

- ① 협회회의 회원대학 자격은 전국의 대학교로 하며, 대학내 링크플러스사업단 또는 드론관련 단체가 협회회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선임한 교직원이 대학을 대표한다.
- ② 제5조의 회원대학이 되고자 하는 대학은 협회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회행사시 참가비를 납부하고 참가한다.
- ③ 회원대학의 탈퇴는 협회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 ④ 제6조 제2항의 회원대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회원대학 가입, 제3항의 회원대학 탈퇴 및 제4항의 회원대학 자격정지 상황은 총회 시 보고한다.
- ⑥ 탈퇴한 회원대학이 재가입하는 때에는 제2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회원대학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대학은 협회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협회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3. 협회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협회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 ② 회원대학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회의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회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 의결된 ‘협회회 참가비’와 ‘연행사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③ 회원대학이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출·참석하여 회원대학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협회회 양식의 위임장으로 대리,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결정사항의 준수와 징계)

- ① 회원대학은 협회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대학으로서 협회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대학은 제2항에 정한 기간 동안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④ 회원대학이 소속 대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회회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재심에 회부하고, 이사회

는 재심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로써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소집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교

제8조(임원교의 종류)

- 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교 1인
 2. 부회장교 1인
 3. 이 사 교 5인
 4. 감 사 교 2인
- ② 전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교의 궐위 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부회장교가 회장교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교를 제외한 임원교의 임기 중 결원교가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교의 임기는 전임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교의 선임방법)

- ① 회장교는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교는 회원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③ 감사교는 회원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이사교는 회원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교의 사임 및 해임)

- ① 임원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대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의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대학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후임자가 이를 계승한다.

제12조(임원교의 임무)

- ① 회장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교는 회장교를 보좌하고, 회장교의 유고 시 직무 대행을 한다.
- ③ 이사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교는 이 협의회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안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원의 제명 결정 승인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의 의사를 취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기본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각종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상벌결정 승인
- 8.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9.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서면 이사회도 가능하다.

제22조(이사회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6장. 분과위원회·지회

제24조(분과위원회·지회의 설치)

- ①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 ① 협의회 업무처리 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장의 직무)

-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조직,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장.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제28조(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협의회는 국내외 드론 및 스포츠단체들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드론스포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대학 및 회원의 회비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회원 대학의 보조금과 기부금
3. 각종 사업 수익금과 후원금
4. 기타수입

제3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회계감사)

협의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3조(결산)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직원의 신분보장)

정관 제29조에 따른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6조(저작권의 귀속)

협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협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 저작권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37조(협회의 해산)

-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산 당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고문)

- ① 협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9조(자문위원회)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기부금에 관한 사항의 공개)

기부금·후원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1조(규정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수익사업)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조에 규정한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 7. 21.(출범일)부터 시행한다.

지회 운영 규정

<제정 2021. 3.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회는 권역별 참여대학의 집합체이다.

② 지회 설립의 지역적 구분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으로 한다.

제3조(설립요건) ① 각 지회는 권역내 5개 이상 대학의 참여시 설립 할 수 있다.

② 지회 참여대학의 자격은 협의회에 가입한 대학으로 한다.

③ 설립요건을 충족한 지회가 지회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제4조(지회장) ① 지회장은 지회내 참여대학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대하며 협의회장이 인준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지회의 역할) ① 지회는 협의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권역내에 확산하고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특별사항) 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장은 지회의 설립요건이 불충분한 권역임에도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임명된 지회장의 임기는 각 1년 단위로 하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단, 임명 후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임기를 새로 시작하며 제4조에 따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